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여자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1923년 제12차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나 당시 조선총독부의 반대로 1926년 15회 총회에서 유안되었다. 그 후 만 30년이 지난 1956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필레(당시 정신여고 교장)씨가 본 교단 총회에 장로교여자대학 신설을 청원하여 동년에 장로교여자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김필레 회장이 기성회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57년 본 교단 제42회 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여 1958년 7월에 재단법인 정의학원으로 문교부 인가를 받았고, 1964년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초대 이사회는 예장총회 4명, 여전도회 4명, 선교회 3명, 유지 5명(감사 2명 포함)의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립목적이 여자대학을 설립하여 지(智)·덕(德)·술(術)을 겸비한 기독교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총회는 교지를 마련하고 대학설립에 따른 재정은 여전도회와 선교부, 또한 유지, 그리고 대학설립을 위임받은 고헥경 박사의 활동으로 1961년에 서울여자대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여성 인재 육성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숭고한 이상으로 설립되었다. 사랑과 헌신의 고결한 정신, 인간 존중 사상,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 교육이라는 이상과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서울여자대학교를 현대사의 굴곡과 혼탁한 사회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깨끗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동안 서울여자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성을 발휘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왔음을 우리는 자부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린 정신으로 다원화된 세계와 미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여성인력을 키우는 교육의 요람이 되고자 하며, 교육의 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성과 열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가치관의 혼돈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회의 모순에 함몰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울여자대학교는 경제, 사회, 기술, 문화를 포괄하는 환경대응의 논리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인간적 덕목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배전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품성을 지닌 전문지식인의 배출은, 장기적 안목의 교육투자자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봉사과 실천이라는 직업윤리의 확립에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이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독교적 가치가 보편적·세속적 가치와 융합, 상승작용을 하여 인간의 정신을 한 단계 고양시키고 진일보한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 교육현장의 중심축이 되고자 서울여자대학교 전체의 인적, 물질 토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는 자·덕·술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의 설립목표와 더불어 시대적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소명의식과 자기쇄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고등교육의 사명을 성실하고 꾸준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화를 이룩한다.
2. 항속적인 인간적 가치와 본질에 대한 탐구를 강화하여 연구·교육·봉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
3. 고도기술사회의 구조와 자연 환경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4.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전환, 고양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5. 다변화된 세계의 흐름을 예견하고 선도하는 진취적, 실천적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바름인성교육’을 개발·시행한다.
6. 직업적 능력과 경제적 생산성 획득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과 예술, 과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의 유기적 연관과 깊이 있는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7. 우리의 이상과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모색과 자기 검증을 통한 개선작업을 병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이념) 본 대학은 민주국가 건설 초기에 투철한 도의 정신과 탁월한 기술적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 도의교육 및 기술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함으로써 사회와 농촌의 개척자로서 봉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자·탁·술을 갖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제2조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와 고도의 산업기술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탁·술을 갖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전문인의 양성 :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물과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인식능력과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2. 기독교 정신의 함양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심성과 성숙된 인격을 도야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3. 실천인의 육성 : 전문지식의 활용과 민주사회의 가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창달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른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 (특성화 방안)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바름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자질과 기능을 갖추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를 추구한다.

제4조 (개설학과(부)의 발전 방안) ① 본교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 달성과 특성화 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부) 및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2.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행정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체육학과
3.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식품응용시스템학부
4. 미래산업융합대학 :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5. 아트앤디자인스쿨 : 현대미술전공, 공예전공, 시각디자인전공
6. 자율전공학부 : 인문사회계, 자연계

② 학과(부) 및 전공과정별로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과정 전반을 연구·심의하는 ‘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편·보완한다.

③ 교육과정은 정보화세계화 사회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과(부)에서의 다전공 이수를 권장한다.
2. 학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3. 학제간 유기적 관계를 부각시킬 과목을 개발한다.
4. 학과(부) 및 전공과정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합교과과정을 개설한다.

④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교과과정 및 전공과정의 필수과목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전공의 선택해 전능하도록 한다.
2. 편제에 제약받지 않고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3. 조기 졸업제와 계절 학기제를 시행한다.
4. 엄정한 학사관리와 성적평가를 시행한다.

⑤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 협동을 강화한다.

1. 산업체와 연구소에 대한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쉽 학점제를 시행한다.
2.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겸임 교수 또는 객원 교수로 임명한다.
3. 산업체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본교 부설 창업·중소기업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연구체제를 구축한다.
5. 산·학·연 협력 연구의 활성화와 학·연 협동 연구 학위 과정 등을 통하여 산·학·연 협동체제를 강화한다.
6. 기타 산학 협동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공동학술회, 공동전시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 (교수 확보) ① 본 대학은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을 세운다.

1. 본 대학 설립이념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용한다.
2. 교수의 임용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시행하며, 그 기준과 방법·절차는 규정에 따른다.
3. 초빙 교수, 석좌 교수, 산학 협동 겸임 교수제를 활용한다.

제7조 (시설·설비 확보) ① 본 대학의 인간 중심적 교육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캠퍼스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②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첨단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한다.

③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1. 교육 및 연구 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도서관을 첨단학술정보센터로 발전시킨다.
3. 교수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기타 시설 확보) ① 바롬인성교육관, 학생기숙사, 학생누리관, 대학교회, 박물관, 아동 연구원, 체육관,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② 행정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한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9조 (학생 선발) ① 본 대학의 설립이념 및 특성화 교육방안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② 신입생은 일반 및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정보자료의 공개, 모집 요강 사전예고,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 (학생정원 관리) ① 학생정원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 정책과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② 재학중 전공 변경의 기회를 준다.

③ 일반 편입학과 학사편입제도를 유영한다.

제11조 (학기)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제12조 (대학간 학술교류) 국내외 대학(원)과의 학점 인정제 및 학술 교류를 확대한다.

제 5 장 대학 운영

제 1 절 인사관리

제13조 (교직원 채용 기준) ①교수는 일정 수준이상의 연구업적을 쌓고 학생중심 교육과 대학 및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제14조 (교직원 채용 절차) ①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다.

1. 공개채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서류심사, 강의평가, 면접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임용 결정한다.

②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

1. 정규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2. 전문직종 및 경력직원은 특채할 수도 있다.

제15조 (교수평가) ① 교수업적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교수업적 평가의 영역은 연구, 교육, 봉사로 구성된다.
2.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가 제출한 업적평가자료를 근거로 심의하고 그 결과는 재임용, 승진 등에 반영한다.

제16조 (교수능력 향상) 교수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현한다.

1.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2.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업적 목록집을 발간, 연구분위기를 조성한다.
3. 연구년제의 실시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4. 각종 학술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자매결연대학과의 교수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교수학습지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수법 다양화를 도모한다.

제 2 절 재 정

제17조 (재정확보방안) 건설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1. 등록금은 교육원가수준, 교육과정의 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
2.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 및 전입금 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3. 다양한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한다.
4.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확충한다.

제18조 (대학발전기금 모금계획) ①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발전후원회를 둔다.

② 발전후원회는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제19조 (재정 공개)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제20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재정운영에 있어서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21조 (법인의 수익용 재산확보계획 및 관리) ① 법인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익용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 관리한다.

③ 법인은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 6 장 학생의 권리 및 후생복지

제22조 (학생자치의 보장 및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 본 대학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대학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최대

한 보장한다.

③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로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제23조 (학습권의 보장)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본교는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등을 장려하고,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등을 개발함으로써 학과 폐쇄적 전공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성적이의 신청권) 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한 이의신청을 보장하며, 학교는 이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25조 (학생장학금) ① 본 대학은 교내 장학금 및 각종 장학재단·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교외 장학금, 동문회 장학금, 은행에서 제공하는 용자장학금을 포함하여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은 등록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제26조 (학생기숙사) ① 본 대학은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 기숙사는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제27조 (학생진로 및 취업지도, 상담) ① 본 대학은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전담기구로 취업경력개발원을 둔다.

② 취업경력개발원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도한다.

③ 학생상담센터를 통하여 적성, 정서, 성격, 진로 등에 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28조 (교직원복지) ① 본 대학은 교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본 대학은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7 장 장 · 단기 발전계획

제29조 (장 · 단기발전계획) ① 본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은 본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장 · 단기 발전계획은 본 대학의 발전 목표와 전략에 따라 특성화 계획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영역별로 수립한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 (대학헌장의 보완) ① 이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제정과 개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31조 (헌장의 효력과 공포일) ① 이 헌장은 서울여자대학교 조직과 활동의 지침으로서, 대학의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폐폐의 기본이 된다.

② 이 헌장은 1998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장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9, 제199차 이사회)

(제22조를 25조, 23조를 22조, 24조를 26조, 26조를 27조, 25조를 28조, 제27조 내지 제29조

를 제29조 내지 제31조로 하고, 제23조, 제24조를 신설한다.)

제2조 이 헌장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 제219차 이사회)

(제4조 제1항의 1호 내지 5호 개정, 4호 신설)

제3조 이 헌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5, 제235차 이사회)

(제4조 제1항의 4호, 제3항 3호 및 제29조 제2항 개정, 제16조 5호 신설)

제4조 이 헌장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08, 제246차 이사회)

(제27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5조 이 헌장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8, 제246차 이사회)

(제4조의 제1항의 1호 내지 3호 개정, 6호 신설)

제6조 이 헌장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09, 제260차 이사회)

(제20조의 제2항, 제27조의1항 내지 2항, 제30조 2항 개정)

부 칙 (2010, 제264차 이사회)

(1) (시행일) 이 헌장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서문 5호, 제3조, 제5조, 제7조 3호, 제8조 1항, 제9조 3항, 제10조 1항, 제23조 2항 개정)

(2) 제4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제267차 이사회)

(1) (시행일) 이 헌장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1항, 동조 제2항 개정)

부 칙 (2012, 제270차 이사회)

(시행일) 이 헌장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3항제3호 개정)

부 칙 (2012, 제271차 이사회)

(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제5호 개정)

부 칙 (2013, 제282차 이사회)

(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0조제2항 개정)

(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제3항 개정)

부 칙 (2015, 제293차 이사회)

(시행일) 이 헌장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개정)

부 칙 (2015, 제297차 이사회)

(시행일) 이 헌장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단과대학명칭)

(시행일) 이 헌장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제4호 개정, 학과명칭)